

초 ·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8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이종배 · 이성권
우재준 · 서명옥 · 배준영
진종오 · 송석준 · 강명구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, 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 제한사유나 결격사유는 「교육공무원법」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방과후학교 또는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강사 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, 강사 등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반 시 제재조치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2조).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전단 중 “등을”을 “등(이하 “산학겸임교사등”이라 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”을 “산학겸임교사등의”로 한다.

② 산학겸임교사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산학겸임교사등은 제1항 후단에 해당하거나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산학겸임교사 등) ①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·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립·공립 학교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 3제1항 및 제10조의4를, 사립학교는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 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.	제22조(산학겸임교사 등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등(이하 “산학겸임교사등”이라 한다)을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② 산학겸임교사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③ 산학겸임교사등은 제1항 후단에 해당하거나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·자격 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④ 산학겸임교사등의----- ----- ----- ---